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김영주 의원 등 6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03월 14일
- 회부일자 : 2018년 03월 15일

3. 제정이유

-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한 규정 (안 제1조)

- 충청북도학사 재학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

나. 재단 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 장학시설 관리·운영, 장학지원 등

다. 재단의 임원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라. 재단의 재원 조성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 도 및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및 수익금 등

마. 재단에 대한 검사·감독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

바. 재단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가능

## 5. 검토의견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는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출연 근거와 방법 및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재단의 목적사업 소요경비 조달을 위해 의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립목적 :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업내용 : 장학시설 관리·운영, 장학지원,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및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으로, 안 제6, 7조에는 기구 구성(이사회, 사무국) 및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 12조에는

재단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과 재단이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재정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제재 사항을 규정함.

- 재단이 안 제4조에 따라 일부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재단의 투명한 운영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 및 감독이 요구됨.

○ 안 제8조에는 재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단의 재원 구성 : 도 및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안 제13조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상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기 시행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제정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적용시점 상 혼란을 조정하였음.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 목적, 주요사업, 출자·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각 조항들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 절차상 입법예고를 통한 도민의 의견 반영 및 해당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이견(異見)은 없음.

**참 고****재단법인 충북학사 일반현황**

## □ 법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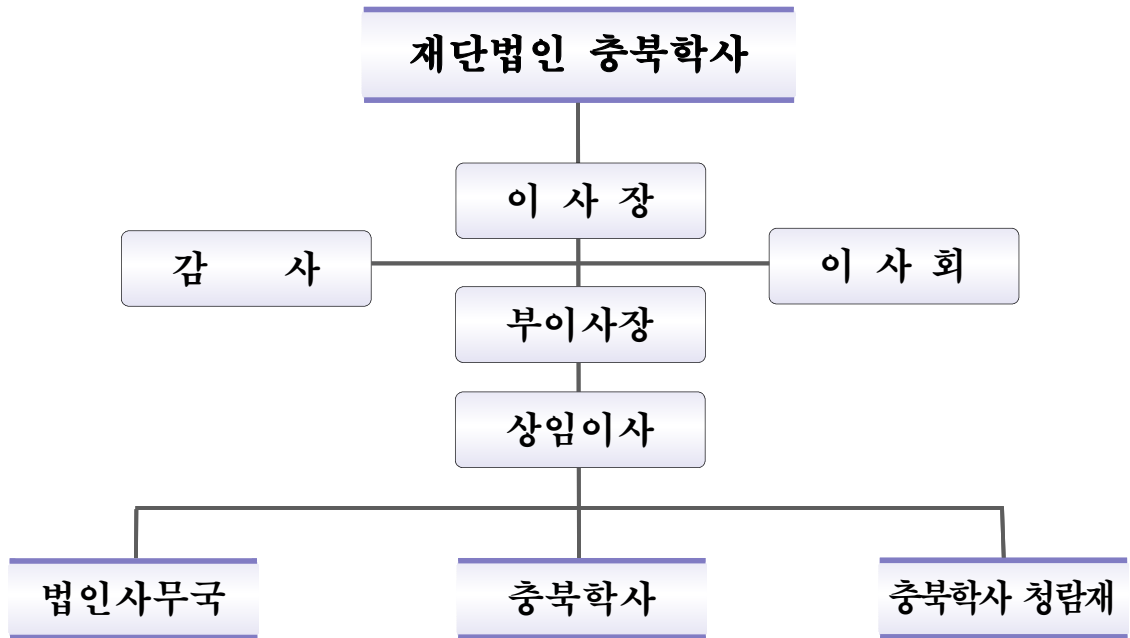
- 법인설립 : 1991. 12. 11(충청북도 교육청)
- 임 원 : 총 12명(이사 10, 감사 2)
- 기본재산(기금) : 37.5억원(은행예치관리)
- 주요사업 : (재)충북학사·충북학사 청람재 운영 및 관리,  
충북미래관 관리

## □ 학사시설 현황

구 분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
설립목적	-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 육성	
설 립 일	- 1992. 3.15(신축이전 '09.8.25)	- 1999. 3.13.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7(지북동)
규 모	- 대 지 2,692.00㎡, - 연면적 12,587.40㎡	- 대 지 5,690.00㎡, - 연면적 5,562.67㎡
재사능력	- 356명(남 194, 여 162)	- 264명(남 132, 여 132)
운영인력	- 21명(일반직 10, 무기계약직 11) ※ 충북미래관 수탁관리 인력 포함	- 14명(일반직 7, 무기계약직 7) ※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이 겸임
운영재원	- 입사생부담금, 도비보조금, 기금이자수입 등	- 입사생부담금, 도비보조금 등
2018년 당초예산	2,592,945천원(보조금 1,445,000천원)	1,727,394천원(보조금 1,006,000천원)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5급	6급	7~9급	무 기 계 약 직
계	정원	38	2	3	5	10	18
	현원	35	1	2	3	11	18
법 인	정원	2	-	1	-	1	-
	현원	0	-	-	-	-	-
충북학사	정원	21	1	1	3	5	11
	현원	21	1	1	2	6	11
충북학사 청 람 재	정원	15	1	1	2	4	7
	현원	14	-	1	1	5	7

※ 정원 대비 결원(3)은 겸직운용 : 청람재 원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